

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경만



Q 의지 장착을 위해 수술을 할 경우에도 재요양이 가능한지요?

A 산재보상보험법 제40조의 2 규정(재요양)에 의하면 요양급여를 받은자가 치료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

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지장착을 위하여 절

단부위의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도 재요양이 가능하다.

Q 동료사원이 애경사 등에 참석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에 해당되는지요?

A 직장 동료의 애경사에 업무시간 내 또는 업무시간 외에 참석하는 것은 '사람이 사회 생활을 하면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하여 서로 부조하기 위한 사적, 의례적 행위' 이지, 이를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애경사 참석 중 발생한 재해는 산재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국중합노무법인한솔사무소 (031-877-7582/3)

한·방·상·식

한의학박사 김홍순



허리가 아프세요?

〈저번호에 이어〉 담음요통(痰飲腰痛)-허리에 담이 들어 옆구리쪽이나 등쪽으로 결린다. 이유없이 갑자기 발생하기도 하며 여기저기로 왔다갔다 한다. 이때 담음은 한방적 개념이지만, 근육부위의 순환부전 및 통치는 신허요통(腎虛腰痛)-허리는 신장이 담당하는 곳이다. 신장의 힘이 약해지면 허리가 약해지고, 소변도 힘이 없어져 자주 보게된다. 심한 노동과 성생활 과도로 발생하기도 한다. 이 요통은 은은히 아픈것이 계속

그치지 않고 나타난다. 이런 상태는 골다공증 및 퇴행성 척추증, 퇴행성 디스크 등의 발병을 악화시키거나 빨리 생기게 한다. 여성에게는 갱년기에 많이 생기기 쉽고, 남성은 50-60대에 다발하나 젊은층에도 간혹 있다. 치료는 신장을 보하는 치료를 하는데 육미지황탕(六味地黃湯)에 가감해 치료한다. 풍한습요통(風寒濕腰痛)-허리가 약한틈을 타고 들어가 습한곳에서 거주하거나 하여 발생한다. 특징은 다리쪽으로 당기거나 통증이 왔다갔다 한다. 한요통은 요통이 특히 심하며, 따뜻히 하면 완화되는 성질이 있다. 습요통은 허리가 무겁고 쪼부둥한 것이 주된 특징이다. 치료는 풍한습을 제거하는 오적산(五積散)에 약

제를 가감하여 사용한다. 혈허요통(血虛腰痛)-허리근육에 혈액의 공급이 원활치 못하거나 자궁수술 후유증이나, 허리를 많이 쓰는 것 등은 허리근육의 약화를 초래한다. 대개 신허의 전 단계로 많이 발생한다. 혈을 보하여 허리로 가는 영양상태를 개선시켜주어야 한다. 임상상 근육의 피로를 푸는 쌍화탕(雙和湯)에 가미하여 사용한다. 골격(骨)의 이상이 있는 것은 원 인치료를 해야하며, 대개의 경우 위의 방법을 사용하면 기능적인 요통은 많이 감소 시킬수가 있다. 약물이 나 침 요법 외에도 허리를 강화하는 운동도 많이 알려져 있다. 생활중에 요통이 발생 할 때는 따뜻한 찜질(42-43도)이 비교적 통증을 많이 완화시킨다.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므로 무거운 것을 반복해서 들때는 중간 중간에 허리운동을 한시간에 10분 정도 하는 것이 좋겠고, 물건을 들 때 무릎을 이용해 허리에 걸리는 힘을 분산하는 것도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된다.

☞문의:포천의원(031-535-2536)

의·학·상·식

포천의료원 정형외과과장 차중환



우리 몸에서 운동을 가능케 하는 관절은 적절히 움직여 주고 관리하면 그 기능이 잘 유지되지만 무리하게 사용하거나 적당하지 않은 운동을 하면 해가 된다. 관절염은 퇴행성·류마티드·외상성 관절염 등 그 종류가 많으며 발병시기, 증세, 원인에 따라 치료방법도 다르다. 이 중에서 관절을 많이 사용해서 관절염이 많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여성에게서, 또 비만증이 있는 경우에 그 정도도 심하게 나타나며, 주로

체중이 부하되는 관절인 무릎 고관절 허리 등을 잘 침범한다. 중년 이후의 여성에서 무릎 관절염이 많은 것은 생활습관과 관계가 있는데, 주그리고 앉아 빨래를 하거나 집안청소, 계단을 오르내리는 동작 등은 무릎 관절에 무리를 줘 관절염을 유발시킬 수 있다. 흔히 관절에 통증이 있거나 부어올랐을 때 정확한 진찰을 하지 않고 함부로 약제를 사용하거나 민간요법에 의지함으로써 부작용을 초래하고, 또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침으로써

관절염을 악화시킬 수 있다. 뼈 주사라고 해서 스테로이드 제제를 관절내에 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짧은시간내에 증세를 호전시킬 수는 있으나 자주 사용하면 습관성이 되기 쉬우며 관절연골의 변성을 촉진시키고 2차감염의 가능성을 높여 질환의 전체적인 진행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전문의와의 상의하에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무릎관절이 나쁜 환자가 등산 등 무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관절염이 악화되기 쉬우며 척추가 나쁜 환자가 무거운 기구를 들어올리는 운동은 피해야한다. 관절염 환자에서 통증이 있더라도 적절한 움직임은 관절과 주위 근육 및 인대의 기능유지를 위해 필요하며 운동의 종류, 강도는 전문의와 상의하에 상태에 따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포천의료원(031-539-9114)

법·률·상·담

변호사 박문우



Q 저는 A에게 금 1천만원을 1년 후 받기로 하며 B는 월2천원으로 해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변제기일이 지나도 돈을 받지 못하던 중, 마침 B에게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채무 1천만원의 지급조로 위 대어금채권을 B에게 양도하면서 A에게는 내용증명우편으로 그 양도 통지를 하였습니

다. 위 채권을 양도할 시 이자채권에 대하여는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제가 청구할 수는 있는지요?

A 위 사안과 관련해 채권양도에 있어서 이자채권도 당연히 양도되는지에 관한 관례를 보면,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에 대하여 종속성을 갖고 있으나,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 분리하여 양도

할 수 없고 원본채권과 별도로 변제할 수 있으며, 시효로 인해 소멸되기도 하는 등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원본채권이 양도 된 경우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의 양도 당시 그 이자채권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연히 양도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민법 제379조, 대법원 1989. 3. 28. 88다카12803).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귀하가 B에게 위 대어금반환청구채권을 양도하면서 이자채권까지도 양도한다는 특약이 없었던 경우라면, 변제기까지의 이자채권을 양도하면서 당연히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귀하는 A에게 1천만원에 대한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박문우변호사 (031-874-1652)

여·성·상·식

포천 가족성·상담센터 이문환



Q 청소년 문제가 나날이 심각한데 저는 어떤 부모인지 스스로 점검할 자료는 없나요?

A 먼저 열린 마음으로 자녀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나는 어떤 부모인가? 알아보기 자료를 보면 가정환경에는 양친의 유무, 형제수와 서열, 부모의 직업, 학력 경제적 수준과 같은 물리적 환경과 부모와 자식간의 심리적 상호작용 같은 심리적 환경이 있습니다. 심리적 환경이란 바로 부모의 양육태도이며 우리 부모들의 관심인 자녀의 성격, 학업성취 등과 같은 물리적 환경보다는 심리적 환경 즉 부모의 양육태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학업성취와

의 관계를 알아본 많은 연구들은 아이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적이면서도 간섭이나 통제없이 아이 스스로 해결수 있는 기회를 주는 자율적인 양육태도가 스스로 동기화 되어 공부를 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도 강하여 공부를 잘 하는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는 어떤 부모인가? '를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부모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하는 것 입니다. 아이가 판단한 양육태도가 실제의 양육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이 검사를 해보고 자신의 양육태도를 점검하는 기회를 가지기 바랍니다. * 가정환경 검사 * 응답요령은 '거의 같다' 고 생각하면 1, '대체로 같다'고 생각하면 2, '대체로 다르

다고 생각하면 3,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면 4점을 주면된다. 표시방법은 각항에 번호로 표시하면 됩니다. 1. 나를 너무 어린애 취급 하신다. 2.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신다. 3. 내게 칭찬을 주거나 비웃기도 하신다. 4. 가족회의에서 자녀들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권장하신다. 5. 성적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야단을 치신다. 6. 친구들을 집으로 데려오는 것을 좋아하신다. 7. 나를 무섭게 대하신다. 8. 내가 쓸 물건은 내가 사도록 한다. 9. 친구를 집에 불러 다니는 것을 엄격히 금하신다. 10. 나의 비밀도 이야기 할 수 있을 만큼 너그로우시다. 11.화가 나셨을 때 나를 심하게 벌하신다. 12. 친구 사귀는 것에 대해 간섭하시지 않는다. (다음호에 이어) ☞문의:포천 가족성·상담센터 (031-542-3171)

세·무·상·담

공인회계사 송관수



Q 공장으로 사용토지와 건물을 구입하고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아직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의 소유주가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교포로 비거주자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 뉴스에서 봤는데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에 매입자는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에서 일정율의 세금을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 종전에는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절차가 거주자의 신고 납부절차와 동일하였으므로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에 관한 원천징수 의무가 없었으나, 2004년 1월 1일부터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하는 자는 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따라서 매수자는 매입액의 10%(다만,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이 확인되어 양도차익의 계산의 가능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5%를 비교하여 적은 금액)를 잔금지급시 지급액에서 차감하여 원천징수하고 이를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와 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원천징수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양도자가 기준시기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양도자인 비거주자는 양수자가 원천징수한 경우에도 거주자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를 예정(확정)신고하여야 하며, 원천징수당항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송 관 수(02-404-9944)

볼거리와 먹거리 일번지 고모리의 새명소 “컨츄리 치킨 · 호프카페”

편안하고 아늑한 실내공간과 다양한 메뉴를 자랑하는곳



생맥주도 배달됩니다 주문즉시 신속배달

